

대전고등법원 2020. 12. 2 선고 2020나13470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전고등법원 2020. 12. 2 선고 2020나13470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0. 6. 10 선고 2019가합106716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

담당변호사 석윤수

피고,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

담당변호사 심규황

변론 종결 2020. 10. 28

판결 선고 2020. 12. 2

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. 6. 10. 선고 2019가합10671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B 사이에 2018. 11. 27.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1. 28. 접수 제 1831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' 4. 결론'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이유중 "피고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A"과 " 피고 회사"를 "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으로, "피고 B"를 "맛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 4면의 제 9행과 제 12행부터 제 1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20행의 "3."을 "2.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 "(2)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' G가 B에게 5, 000만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이G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자가 된 것이고, G와 피고 C이 B나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A의

채무상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'고 주장하나,①피고 C은 제 1심에서 ' G에게 대여했던 5,000만 원의 금원을 G로부터 반환받는 대신 월15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이를 B에게 대여하고,그 담보를 제공받기 위해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' 고 주장하였다가 제 1심법원이 위 주장을 배척하자 항소심에 이르러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주장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, 변경된 주장에 부합하는 G 명의의 경위서(을 제 3호증) 를 제출한 점, ②G와 B사이에 위주장과 같은 대여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 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을 제 3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,을 제 1, 2호증 등 제출된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 ”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허용석판사 김경희판사 박철홍

별지